

수 신 : 회원제위
참 조 :
제 목 :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개정 의견 조회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(안)이 입법예고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5. 21(목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주요내용

-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국토청장의 직접 처분 권한 근거 마련(제86조 개정)
-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고 시정계획 수립 시 행정처분 감경 근거 마련 (별표6 개정)

- 붙임 1. 국토교통부 공고문 1부.
2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부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
회 장 오 성



담당 경영지원부장 유제연 기획관리실장 이을예
시행 전건협 강원 제 371 호 (2026. 5. 19)
우 2437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4층 / gangwon.kosca.or.kr
전화 033-254-4324 전송 033-257-4324 / 전자우편 kosca32@kosca.or.kr